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 표] <개정 2021. 6. 23.>

수 수 료 (제7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 · 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 · 인화물 · 복제물
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	○ **열람** – 1일 1시간 이내: 무료 –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**사본(종이출력물)** –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–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 · 테이프 등	○ **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** –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–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**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** –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–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**영화필름의 시청** –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–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**사진필름의 열람** –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	○ **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** –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–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** –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–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사진필름의 복제** –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사진필름의 인화** –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 · 슬라이드 등	○ **마이크로필름의 열람** –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**슬라이드의 시청** –1컷마다 200원	○ **사본(종이출력물)** –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–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**마이크로필름의 복제**

		–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슬라이드의 복제** –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**전자파일(문서・도면・사진 등)의 열람** –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–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**전자파일(오디오자료・비디오자료)의 시청・청취** – 1편: 1,500원 ・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**사본(종이출력물)** – A3 이상 300원 ・ 1장 초과마다 100원 – B4 이하 250원 ・ 1장 초과마다 50원 ○ **전자파일(문서・도면・사진 등)의 복제** –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・도면・사진 등)** –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–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**전자파일(오디오자료・비디오자료)의 복제** – 1GB마다 8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